

# 심사보고서

2019. 9. 20.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162
----------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6. 강남구청장(총무과)

나. 상정의결

- 제2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19.9.20.)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신동명)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9376호, 2018.12.18. 일부개정, 2019. 1. 1.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특별휴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 제8조(출장공무원) <삭제>
  - 제10조(연가일수) <삭제>
  -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삭제>
  - 제20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5항, 제6항 <삭제>
  -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삭제>
  - 제22조(병가) <삭제>

- 제23조(공가) <삭제>
- 제24조(특별휴가) 제2항, 제4항, 제10항, 제11항, 제15항 <삭제>
-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 제28조(겸직허가) <삭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특별휴가 개정사항 반영 및 추가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안 별표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안 별표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 일수 확대(안 별표 3)
  - 육아시간 사용조건 및 계산방법 구체화(안 제24조제16항)
  - 공무상 재난재해 대응으로 정신적 외상이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는 공무원의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휴가 근거규정 마련(안 제24조제18항)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 입법예고(2019. 8. 2. ~ 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첫째, 배우자가 출산시 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출산휴가 1일을 신설하며 셋째,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넷째,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을 개선하며 다섯째, 육아시간 사용조건 및

계산방법 신설하고 여섯째, 유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제약사항을 신설하며 일곱째, 공무상 재난재해 대응에 따른 특별휴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문을 조례에 중복기재하고 있는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에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상위 법령이기 때문에 조례보다 우선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같은 내용을 중복기재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법령 개정 시 해석상 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체계정당성의 원리’에도 맞지 않아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복무규정 중 특별휴가 근거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 제7조 및 제7조의7에 따른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해 보임.

- 안 제8조(출장공무원) 규정은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규정과 중복기재 되어 있으며

- 안 제18조(연가일수)는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규정과 중복기재되어 있는 바 입법체계상 바람직한 입법형식은 아니라고 보여져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18조의 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신설규정은 복무규정 제7조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별표 4와 같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의 규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 규정과 중복기재 되어 있고

- 안 제20조(연가계획 및 승인)제5항 및 제6항은 복무규정 제7조제4항 및 제7조의3 규정과 중복기재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임.

- 안 제21조(연가일수의 공제), 제22조(병가) 및 제23조(공가)규정은 복무규정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제7조의5(병가) 및 제7조의6(공가) 규정과 중복기재 되어 삭제하는 것임.

- 안 제24조(특별휴가)제2항, 제4항, 제10항, 제11항 및 제15항은 복무규정 제7조의7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규정과 중복기재되어 삭제하는 것임.

- 안 제24조(특별휴가)제16항 및 제17항의 신설규정은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에 대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에 대한 휴가계산규정을 명확히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같은 조 제18항의 신설규정은 재난재해 시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규정은 복무규정 제7조의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중복기재 되어 삭제하는 것임.

- 안 제28조(겸직허가) 규정은 복무규정 제11조(겸직허가)와 중복기재 되어 삭제하는 것임.

- 안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출산란 중 ‘배우자’ 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개정하는 것은 복무규정 제7조의7제2항 관련 별표 1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휴가 1일 신설과 사망란 중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휴가일수를 3일에서 5일로 개정하려는 것은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서울시 및 타 구 사례와 비교해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안 별표4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중 공무원외 경력을 민간 경력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재직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2
----------	-----

제출년월일 : 2019. 9. 6.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총무과

###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9376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9. 1. 1.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특별휴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 1) 제8조(출장공무원) <삭제>
- 2) 제18조(연가일수) <삭제>
- 3)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삭제>
- 4) 제20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5항, 제6항 <삭제>
- 5)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삭제>
- 6) 제22조(병가) <삭제>
- 7) 제23조(공가) <삭제>
- 8) 제24조(특별휴가) 제2항, 제4항, 제10항, 제11항, 제15항 <삭제>
- 9)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 10) 제28조(겸직허가) <삭제>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특별휴가 개정사항 반영 및 추가

- 1)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안 별표 3)
-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안 별표 3)
-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 일수 확대(안 별표 3)
- 4) 육아시간 사용조건 및 계산방법 구체화(안 제24조제16항)
- 5) 공무원 재난재해 대응으로 정신적 외상이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는 공무원의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휴가 근거규정 마련  
(안 제24조제18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19. 8. 2. ~ 2019. 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제7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제4항, 제10항, 제11항 및 제1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승인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

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⑰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승인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⑱ 재난재해 현장 대응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1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p>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p> <p>「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 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p> <p>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하지 않음</li> <li>-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li> </ul> <p>※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p>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및 제7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p> <p>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p>	<p>&lt;삭 제&gt;</p>

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별표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삭 제>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②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신 설>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

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삭 제>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제18조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0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 ④ (생략)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구청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 5에 따라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제20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결근일수 · 정직일수 ·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  
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  
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  
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  
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  
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  
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  
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 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frac{\text{12월-해당 연도 휴직기간(월)}}{\text{12(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 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누  
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  
다.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  
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

<삭 제>

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삭 제>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

제2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③ (생략)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 ⑨ (생략)

⑩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⑤ ~ ⑨ (현행과 같음)

<삭제>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⑫ ~ ⑭ (생략)

⑮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신설>

<삭제>

⑫ ~ ⑭ (현행과 같음)

<삭제>

⑯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승인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 설>

<신 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⑰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승인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⑱ 재난재해 현장 대응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8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삭 제>

## 신 · 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별표 3]</b> <b>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70%;">대상</th> <th style="width: 20%;">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결혼</td> <td>본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5일</td> </tr> <tr> <td>자녀</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일</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출산</td> <td>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5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입양</td> <td>본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20일</td> </tr>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사망</td> <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5일</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3일</td> </tr> <tr> <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3일</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일</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일</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산	배우자	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p><b>[별표 3]</b> <b>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70%;">대상</th> <th style="width: 20%;">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결혼</td> <td>본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5일</td> </tr> <tr> <td>자녀</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일</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일</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출산</td> <td>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u>10일</u></td> </tr> <tr> <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u>1일</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입양</td> <td>본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20일</td> </tr>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사망</td> <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5일</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3일</td> </tr> <tr> <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u>5일</u></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일</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일</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산	배우자	<u>10일</u>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u>1일</u>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u>5일</u>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산	배우자	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산	배우자	<u>10일</u>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u>1일</u>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u>5일</u>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p><b>[별표 4]</b> <b>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 관련)</b></p> <p>1.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 (즉, 호봉 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p> <p>2.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 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하지 않음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p> <p>※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p>	<p><b>[별표 4]</b> <b>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b></p> <p>1. <u>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u>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 (즉, 호봉 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p> <p>2. <u>민간 경력별 연가 가산 일수</u>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하지 않음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p> <p>※ 재직기간이 <u>1개월</u>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p>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과 중복된 조항의 삭제 및 특별휴가의 변경 및 추가 사항으로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 3. 미첨부 사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과 중복된 조항의 삭제 및 특별휴가 추가 및 변경,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 4. 작성자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성명 진성용(02-3423-5174)